

알기 쉬운 생활법률

◎ 아르바이트(일용직) 하다 다쳐도 산재신청 가능한가?

Q :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뒷 통수 5~6cm정도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수술 받고 병원비 15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지불하였습니다. 그 후 통원치료 비용을 회사에서 후에 준다고 하여 자비로 병원을 다녔습니다.

수술부위가 골아서 재수술을 하고 다음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해놓고 일을 그만뒀습니다. 이후 재수술 병원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였더니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병원비 지급이 곤란하다고 말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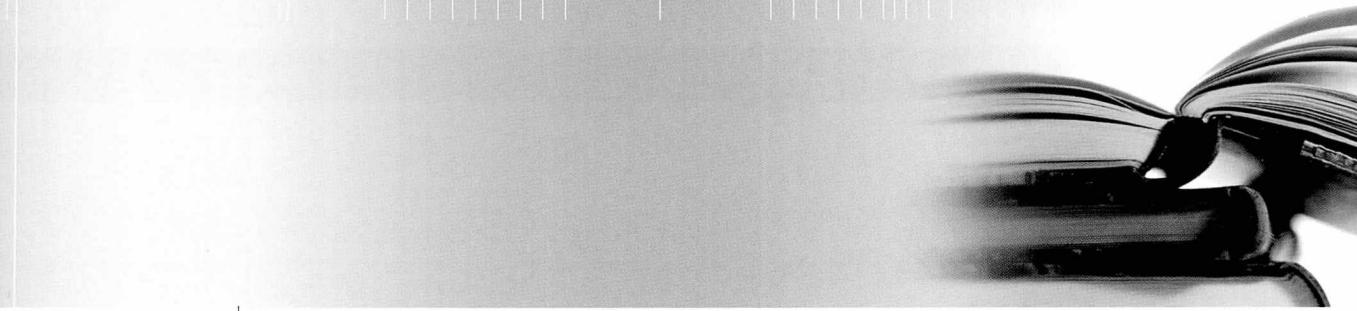
회사에서 병원비를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? 또 후유증 생기면 병원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A :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요즘 법적으로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 귀하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.

참고로 산재신청의 경우 병원비,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, 후유 장애시 장애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

◎ 교육기간 중과실은 배상 책임 없어

Q : 아르바이트(일용직)를 하는 대학생입니다. 교육기간 중 서투른 일처리로 배상책임을 통보받았습니다. 관리자가 부재중일 때 혼자 매장을 관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전에 관리자로부터 이일에 대한 특별한 주의도 없었습니다. 초기 계약 때 아르바이트생 과실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. 교육기간 중 지도할 관리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르바이트생(일용직)의 책임과 배상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?

A : 귀하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, 교육기간이였고 특별히 관리자 역시 귀하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상태이고, 관리자 역시 관리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. 물론 귀하의 책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.

